

2026년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

2026년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12월 일

기 흥 동 장



1 채용개요

채용분야	채용인원	채용기간	근무기관	담당업무
청사 청소	1명	2026.01.02. ~ 2026.12.31.	기흥동 행정복지센터	- 청사 내·외부 청소 및 환경정비 - 화장실 소모품 비치 및 관리 - 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반 등

□ 보수 및 복무기준

신 분 : 기간제 근로자

○ 근로기간 : 2026. 1. 2. ~ 2026. 12. 31.

※ 근로기간은 예산 및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근무 태만 등 더 이상 고용이 계속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 발생 시 해고할 수 있음.

○ 보 수 : 일당 59,650원 / 기타 수당 별도 지급

○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5시간(07:00~13:00, 휴게시간 1시간 포함)

○ 직원복지 : 4대 보험 가입, 명절수당 지급

□ 응시자격

○ 공통사항

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

※단,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으로서 근무예정일 기준 만55세 이상인 자 우선 선발

-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

○ 우대사항

- 대한민국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

○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용인시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인 자로써, 새로운 근무개시일 이전까지 중복 취업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자
- 공무원, 기간제로 재직하였으나 징계로 해임·파면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- 「부패방지법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람
- 「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4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
- 그 밖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

※ 결격사유가 추후에 확인된 경우,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
□ 채용일정

- 모집공고 : 2025. 12. 11.(목) ~ 12. 18.(목)
- 원서접수 : 2025. 12. 11.(목) ~ 12. 18.(목)
- 서류심사 : 2025. 12. 19.(금) (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)
- 면접심사 : 2025. 12. 22.(월) ~ 12. 24.(수) 예정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5. 12. 26.(월) ~ 12. 31.(수) 예정

(최종합격자에게 개별 연락)

※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※ 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는 면접대상자 개별 연락 안내

□ 원서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2. 11.(목) ~ 12. 18.(목) 09~18시 (토·일요일 제외)
- 접수장소 : 기흥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
-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

□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(붙임1)
- 이력서 1부,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(붙임2, 붙임3)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(붙임4, 붙임5)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)
- 경력증명서(원본) 1부
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(발행기관 직인 날인) 제출
 - 이력서 상에 기재한 모든 경력은 경력증명서 첨부 시 인정
-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
- 채용건강진단서(최종합격자에 한함)

-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 처리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,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류와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,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.
-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최종합격자는 제출한 채용건강진단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채용 확정됩니다.
* 건강검진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 불가
-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,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이 외 사항은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합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흥동 행정복지센터(☎031-6193-6671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[붙임2]

이 력 서

가. 공통사항					
응시 번호		응시 분야		성명	

나. 응시자격				
자격 증	자격증명	자격증 취득(예정)일		자격 검정기관
경 력	근무기관	근무기간	직위	담당업무
학 위	전공분야	학위 취득(예정)일		학위 종류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성명 : (인)

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

◎ 자기소개서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◎ 직무수행계획서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[붙임5]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-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(기간제 포함),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-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있음 없음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

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‘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
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	-----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1, 2, 4, 42, 4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	-----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
년 월 일
지 원 자

(서명)

< 작성요령 안내 >

□ 응시원서

- 워드입력·자필작성 모두 가능
-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(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시 부여함)

□ 이력서

- 워드입력·자필작성 모두 가능
- 이력서상에 기재한 경력, 자격 사항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
 - ※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 금지 (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)
- 이력서 서식의 틀은 유지하되 칸 크기, 간격 등은 조정 가능하며,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'해당없음' 으로 표기

□ 자기소개서

- 기본 작성 문항은 유지하되 줄간격, 글자크기 등은 조정 가능
- 부모, 친인척, 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 금지